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과도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평가·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2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재위탁 업무의 범위·기간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

◉대통령령 제3064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064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4”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